

No. 43192

**Republic of Korea
and
Egypt**

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the mutual exemption of visas of diplomatic and official/service or special passports (with annex). Seoul, 18 March 1996

Entry into force: *11 April 1998 by notification, in accordance with article 8*

Authentic texts: *Arabic, English and Korean*

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: *Republic of Korea, 15 November 2006*

**République de Corée
et
Égypte**

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arabe d'Égypte relatif à l'exemption mutuelle de visas dans les passeports diplomatiques et officiels/de service ou les passeports spéciaux (avec annexe). Séoul, 18 mars 1996

Entrée en vigueur : *11 avril 1998 par notification, conformément à l'article 8*

Textes authentiques : *arabe, anglais et coréen*

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: *République de Corée, 15 novembre 2006*

[KOREAN TEXT – TEXTE CORÉEN]

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
외교관 및 관용, 공무 또는 특별여권에 대한
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는,

양국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양 국민의 양국간 공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(이집트 아랍공화국의 경우는 특별 또는 공무)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(관용/공무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의 범주는 부속서에 첨부한다).

제 2 조

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/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들의 가족은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여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.

제 3 조

제2조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, 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의 국민은 타방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제 4 조

외교관 또는 관용/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타방국 영역에서의 입국 및 출국은 양국의 국제여객 통행을 위하여 공인된 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
제 5 조

이 협정으로 외교관 또는 관용/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의 국민이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

각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.

제 6 조

이 협정은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안전 또는 보건과 관련된 일반적 성격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일방당사자에 의한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는 어떤 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 조

양 당사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교관 및 관용/특별 및 공무여권의 견본 3매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교환한다. 동 여권의 형태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, 양 당사자는 그 변경을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

제 8 조

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을 위한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
통보하는 외교각서를 상호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.

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개월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
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매 5년마다
자동 연장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
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1996년 3월 18 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, 아랍어 및 영어로
각 2부를 작성하였다. 해석이 상위한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공로명

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